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상담원·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등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 자격 기준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일수 산입 범위(안 제4조제3항)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그 조치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는 그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출석일수에 산입함

나.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안 제5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으로,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보호시설 입소자 치료를 위해 지원되는 의료비로 규정함

다.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사유(안 제5조의2)

일반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를 삭제함

라.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안 제7조의3)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 요

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상담원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도록 함

마.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 1)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구분 중 소장을 ‘전문소장’으로, 부
소장을 ‘행정소장’으로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을 “절차 및 조치에 소요되는”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을 “의료비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는 해당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

9조제1항제3호·제3호의2·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회신 등
에 필요한 서식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제2호다목1) 중 “소장”을 “전문소장”으로 하고, 같은 란 2) 중 “부
소장”을 “행정소장”으로 하며, 같은 란 나) 중 “같다)”를 “같다)으로서”
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삭 제 ② (생 략) ③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 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 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 ----- 절차 및 조치에 소요되는 -----.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란 <u>퇴소 시 자립지원금을</u> 말한 다.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제5호----- ----- -- <u>의료비를</u> ----- --.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 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 의 연장) -----제3항----- ----- ----- ----- -----.
1. <u>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u> 2. · 3. (생 략) <u><신 설></u>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3(<u>결격사유 확인을 위한</u> <u>범죄경력조회</u>) ① 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u>범죄경력조회</u> 는 <u>해당 상담소 · 보호시설 · 통합</u> <u>지원센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u>

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제3호의2·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연 락 처	(02) 2100 - 6392